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8일, 박수영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2.26.)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2025.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영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약 절반이 반도체 기술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 있는 등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용수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국내 기술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기술 유출 방지·인재 육성 및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조치는 다른 주요 국가보다 미흡한 실정임.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간주하여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병행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3건의 제정안(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컨트롤타워 설치, 반도체특구(클러스터, 메가클러스터)의 지정,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보조금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제 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특별법안임.

김태년의원안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 박수영의원안은 본문 35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 송석준의원안은 본문 1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章)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

아래 [표 1]은 3개의 제정안을 이해의 편의를 위해 총론, 기본계획·시행계획·통계작성, 컨트롤타워, 반도체특구 지정, 지원 정책, 인·허가 및 예타 등 특례,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인력양성, 전문기관, 수출 승인, 부칙 등으로 구분한 것임.

[표 1] 제정안의 구성

구분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총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 제4조(타 법률과의 적용 관계)
기본계획 시행계획 통계작성 등	제5조(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반도체 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5조(국가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반도체 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국가반도체 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5조(정부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반도체 산업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작성)
컨트롤 타워	제8조(국가반도체위원회)	제9조(국가반도체 산업본부)	제7조(반도체 산업발전특별위원회)
특구 (클러스터) 지정 등	제10조(반도체 특구의 지정 등) 제11조(반도체 특구의 변경 및 해제)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제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10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지원정책, 인허가 및 예타 등 특례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 발전 지원)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제13조(인·허가등의 신속 처리 특례) 제1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제10조(국가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6조(국가반도체 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9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제11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계획) 제13조(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제15조(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구분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7조(국가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제18조(국가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제19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26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8조(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입지 및 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9조(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기금 또는 특별회계 등	제16조(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 조성) 제17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제20조(국가반도체 산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인력양성	제18조(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20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1조(국가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제22조(국가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제24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2조(인력양성 등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전문기관		제25조(국가반도체 산업진흥센터의 설치)	제14조(한국반도체 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수출승인 등		제27조(국가반도체 산업 기술 수출 승인 등의 면제) 제28조(국가반도체 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29조(국가반도체 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30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제31조(청문) 제32조(벌칙) 제33조(예비·음모) 제34조(양벌규정)	

구분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35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수사 특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반도체 특구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3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시행계획) 수립, 반도체특구(클러스터 또는 메가클러스터) 지정, 전력 및 용수 등 인프라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 사업자가 기반시설 구축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생산시설 등에 대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지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요 차이점으로는 ① 컨트롤타워와 관련하여 김태년의원안 및 송석준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위원회” 또는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반면, 박수영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고, ② 박수영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 및 전력·용수 공급 등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

과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김태년의원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 조성을, 박수영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④ 연구개발 및 실증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박수영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송석준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⑤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없을 시 기술수출 승인에 대한 승인·신고 절차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등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하 개별 조문 검토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임.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3건의 제정안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임.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¹⁾, 시스템반도체²⁾, 파운드리³⁾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제 경쟁

1) 팹리스(fabless)는 제조 설비(fabrication facility)가 없다(less)는 뜻으로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 및 기술 개발만 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2)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력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역량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⁴⁾.

또한,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국가안보와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대만,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⁵⁾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있는 반도체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는 등 미래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반도체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 및 정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력·용수 등 산업인프라 공급, 인재육성, 보조금지급 등 국가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대비됨.

3)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을 전문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4) [참고자료 1] 반도체 산업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참조

5) [참고자료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지원 현황 참조

적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국의 경쟁적 지원은 반도체의 과잉공급과 가격하락을 통해 반도체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산업 강화, 국가간 통상 관계 악화 및 무역제재의 표적이 될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⁶⁾,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 과정 속에서 우려되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존의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정 '22. 2. 3., 시행 '22. 8. 4.)은 '22년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CHIPS 보조금정책의 역설, 경쟁적 반도체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에 대한 대응역량 조기 확보 필요」, 과학기술정책브리프 vol.25(2024.4.9.)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로서, 제정 당시 동법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릴 만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주된 제정 목적이었고, 용인·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조성·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특별조치법임.

동 법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신속 인허가 패스트 트랙,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제정안에서 반영하려 하는 사항들을 이미 다수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지원 대상을 반도체산업에 집중하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및 국가·지자체의 비용 부담,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등 각종 특례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차별화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공통점 및 차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롭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보완·개정하는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체계 및 행정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적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 법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상의 중복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법률간에 명확한 기능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의 제명 및 목적(안 제명 및 제1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 내 반도체산업의 경쟁 력 강화 및 발전 가능 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 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 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 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 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 도체산업이 지속 가능 한 성장기반을 구축하 여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 한민국 반도체 주도권 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 법률의 주요 규정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김태년의원안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강조한 반면, 박수영의원안은 ‘국가반도체’와 ‘보호’가 특징적이고, 송석준의원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발전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제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법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발전법」,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우수 인재를 지속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또는 ‘특별조치법’의 제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1조(목적)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등의 내용을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제명 및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정의·국가 등의 책무·다른법률과의 관계 (안 제2~4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기술”이란 반도체 재료 및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메모리반도체, 비메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자회소자의 제조·제작, 설계, 응용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술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도체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반도체 특구”란 반도체기술 관련 교육 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란 반도체 특구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고 반도체 특구에서 배출하는 폐수·폐기물을 처리하기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등을 설계·제조·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등을 설계, 제조, 공급, 연구, 개발 등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반도체메가클러스터”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연대협력모델”이란 반도체산업 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u>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u>반도체사업자는 혁신적인 반도체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u>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원활하고 효율</u>	제3조(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 ① <u>국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②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u>사업자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u>과 <u>첨단기술의 유출방지</u>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u>노력하여야 한다.</u> ④ <u>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u>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u>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u>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u>반도체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u>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u>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지원, 규제완화 등에</u>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u>국가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u>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타 법률과의 적용 관계) 이 법의 <u>내용 중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에</u> 관한 특례와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내용이 <u>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더 유리한 때에는</u>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안 제2조(정의)는 반도체기술, (국가)반도체산업, 반도체사업자, 반도체특구(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반도체산업기반시설, 연대협력모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

하는 규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함.

정의조항과 관련하여 특히 동 제정안의 핵심 용어인 반도체기술, 반도체산업, 반도체특구(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표 2] 법안별 정의 대상 목록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반도체기술	-	-
반도체산업	국가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반도체사업자	-	-
반도체 특구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	-
-	-	연대협력모델

김태년의원안의 경우, “반도체산업”을 “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설계, 응용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반도체의 재료, 제조, 응용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술 및 반도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반도체와 사실상 관련성이 매우 약한 산업도 반도체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송석준의원안의 경우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하나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제정안의 적용지역이 결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3조(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입주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간 적용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다. 기본계획·시행(실행)계획의 수립

(김태년·박수영의원안 제5·6조, 송석준의원안 제5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5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분야의 세계 교역 및 국내	제5조(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국가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국가반도체산업의	제5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 공급과 용수확보를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수급 동향 5. 반도체산업 분야의 공급망 분석 및 보고계획 6. 반도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7.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메가클러스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1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 제6조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또는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세 제정안 모두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은 국가반도체위원회(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이하 “반도체위원회”로 통칭)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김태년의원안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계획(실행계획)에 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도체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시행계획 이행 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정책의 기본방향, 동향 및 발전전망,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공급망, 국제협력, 기술력 향상,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필요한 자원 조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박수영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의 경우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규제완화, 인프라조성,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송석준의원안은 용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유사한 내용의 행정상 의무조항이 다수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내용 중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상의 중복 및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 등)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범부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통계·현황조사 등의 작성

(김태년의원안 제7조, 박수영의원안 제7·8조, 송석준의원안 제6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7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 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국가반도체산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보호 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제6조(반도체산업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에 관한 국제적·경제적·사회적 동향과 기술개발현황을 조사하고, 미래의 전망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동향, 기술개발 현황조사, 미래전망 예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기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하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범위, 종류, 수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년의원안은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 박수영의원안은 국가 반도체산업에 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망 및 통계, 송석준의원안은 반도체산업에 관한 동향과 기술개발현황, 미래전망 예측 및 통계의 작성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관련 통계, 현황조사, 발전전망 예측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추가적

으로 기술개발 현황 조사, 미래전망 예측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통계 작성·관리, 조사·예측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마. 컨트롤 타워의 설치

(김태년의원안 제8조, 박수영의원안 제9조, 송석준의원안 제7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8조(국가반도체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관련 중	제9조(국가반도체산업본부)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반도체산업의	제7조(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상황 점검, 이행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반도체 특구의 조성·지정·해제·지원 및 특구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의 개발 및 관련 품목의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7. 반도체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반도체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반도체산업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해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관계 부처 규제의 개선과 중복방지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조성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인·허가 의제 사항 9.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 특례에 관한 사항 9.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에 대한 인허가의제,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의제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산업의 국가 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산업의 국가 첨단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5. 반도체산업의 국가 첨단전략기술을 보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2명의 부위원장을 두되 부위원장 중 1인은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관 등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대통령이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발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된다. 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도체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김태년의원안은 “국가반도체위원회”, 박수영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송석준의원안은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태년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의 반도체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조직인 반면, 박수영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음.

먼저,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의 경우, 재정지원,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및 규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 해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인 ‘국가반도체산업본부’가 권한 및 책임범위상 이를 통합·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해보임.

한편, 반도체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 김태년의원안은 반도체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반도체산

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송석준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소속인 반도체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하부위원회의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장의 선임 방안 및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조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

반도체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특위와 현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기능상 유사·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반도체산업본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산업부 1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산업 정책을 분리하여 정무직급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위원회의 간사위원(장관급),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차관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사위원으로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될 필

7)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는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장관급)인 간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의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간사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또한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특정 부처 산하에 본부를 두는 것보다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등의 조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바.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김태년의원안 제9조제1항 등)

김태년의원안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4.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5.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6.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김태년의원안은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지원, 해외진출전략자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박수영의원안 및 송

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석준의원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인력양성 및 유치, 고용보조금 등 기능별로 개별 조항⁹⁾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¹⁰⁾, 「산업발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 추진 중인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가

9) 박수영의원안은 제16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7조(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국가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제22조(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제24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6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송석준의원안은 제12조(인력양성 등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제13조(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제15조(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19조(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1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있으며 특정 인력에 대한 우선지원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국가의 고용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사. 직접 보조금 지원 (김태년의원안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2항, 박수영의원안 제11조제3항, 송석준의원안 제8조제3항)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사업자의 반도체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제품 생산 및 정밀 검사 2. 클린룸을 포함하여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고가의 제조 장비 도입 3. 국내에서 개발되지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제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앞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설비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한다.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①~⑪(생략)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반도체 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3. 반도체 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기업이 반도체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반 도체 특구 내 토지 등 취득 비용		

김태년의원안 제9조제2항은 ‘반도체사업자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시제품 생산 및 정밀 검사, 클린룸을 포함하여 첨단 제품 생산을 위한 고가의 제조 장비 도입,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설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2항은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생산 시설, 토지취득비용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

박수영의원안 제11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송석준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세 규정은 공통적으로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직접 지원 근거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현행법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조항인바, 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요건, 절차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김태년의원안의 경우 반도체특구(반도체클러스터·반도체메가클러스터, 이하 “반도체특구등”)와 무관하게 시제품 생산 및 정밀 검사, 클린룸 등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고가의 제조 장비 도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도체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시설, 생산시설, 토지취득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전자의 경우 보조금의 지급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지급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규정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반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박수영의원안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수급 대상을 반도체클러스터 자체 및 사업시행자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송석준의원안의 경우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목적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항에서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직접 보조금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 대하여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행위이므로, 반도체산업 육성이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함께 다른 정책수단의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 마련 시 의사결정 주체와 대상,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일본·EU 등은 자국 내에 투자하는 자국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750억 달러의 대출, 25%의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5G 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2조엔 이상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음.

[표 3]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지원(인센티브) 현황

구분		미국	대만	EU	일본	우리나라
생산시설 보조금		\$390억 (약 53조원)	-	€430억 (약 64조원)	¥2조 (약 17조원)	-
세액 공제	시설	25%	5%	-	-	15~25%
	R&D	-	25%	-	6~12%	30~50%
기간		~'26년	~'29년	~'30년	-	~'24년

* 출처 : 대한상의('24.6월)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쟁국들은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시설 자본투자의 30%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¹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접 비용지원이 없는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은 원가경쟁력에서 열세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직접 지원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국가간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서, 다른 지원 정책과 함께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 옵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기술개발

11)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및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2024.6.)

과 자본투자 경쟁에서 현금의 확보가 기업의 존립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1기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구축하는데 약 2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액 단위상 직접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촉진 측면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다른 지원 정책과의 조화,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 재정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 목적을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외에 시제품 생산 및 정밀검사,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설비, 인력확보 등으로 폭넓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 또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반도체특구등 내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등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절차적으로 반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

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4. 6. 26.)¹²⁾을 마련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 중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아. 반도체특구등의 지정 및 해제, 육성시책 등 (김태년의원안 제10·11조, 박수영의원안 제11·12·13조, 송석준의원안 제8·10·11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0조(반도체 특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반도체산업을	제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12) [참고자료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 6)의 주요내용 참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도체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반도체 특구 지정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1. 제11조제1항의 육성 계획에 부합할 것 2. 반도체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3. 반도체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반도체 특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반도체 특구 개발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 반도체 특구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설비 확충 방안 6. 그 밖에 반도체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 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7.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과 중복하여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 그 밖에 반도체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도체 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반도체 특구의 관리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제11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계획) ①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반도체 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반도체 특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관리권자 2. 반도체 특구가 산업단지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도지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도지사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반도체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반도체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	제10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정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반도체 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계획 및 반도체 특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특구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도체 특구의 변경 또는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더 이상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반도체 특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 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반도체특구등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김태년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광역, 기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특구등을 신청하면 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구의 관리는 대통령령에 따른 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되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반도체 특구계획 및 반도체 특구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반도체위원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박수영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외 투자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등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송석준의원안은 정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반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반도체특구,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등 명칭은 지정·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특구등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정요건과 관련해서는 추진 주체가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추진 의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갖추고 있고, 전력·용수·인력 등 반도체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화단지 조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2항¹³⁾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반도체특구등의 관리·위탁 근거와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같이 특정 기관을 명시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서 관리·위탁의 근거규정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박수영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은 반도체클러스터 및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대한 육성시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 산업기반시설의 구축,

1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성시책(계획)에 대하여 반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계획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립주체가 “정부”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간의 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반도체특구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특화단지¹⁴⁾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기 보다는 운영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일관되고 내실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특구등의 지정·해제 등은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특허청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8조¹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특

1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략)

4.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구등의 육성시책에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자. 반도체특구등에 대한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김태년의원안 제12조제2항, 박수영의원안 제14조, 송석준의원안 제9조 및 부칙)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1.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가 해당 기반시설을 직접 구축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① (생 략) ②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4. 간선도로 5.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7. 그 밖에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 ⑫ (생략)	2.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 칙 제3조(반도체 특구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2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은 이 법 시행 당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이미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기반시설에도 적용한다. 단, 비용부담은 이 법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시행 이후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반도체특구등의 산업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김태년의원안은 용수공급 시설, 전기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간선도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박수영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전력 공급 시설, 용수 공급 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과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축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가 해당 기반시설을 직접 구축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송석준의원안은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정

부가 설치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세 제정안은 모두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각자 다르므로 이를 자세히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 산업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범위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지원 대상	용수공급시설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기공급시설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	-
	간선도로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운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그 밖에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지원 범위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 또는 전액 지원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 사업자가 직접 구축 시 국가지자체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	정부가 직접 설치. 비용부담은 국가가 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 일부 부담 가능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을 포함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도 적용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은 이 법 시행당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내에서 설치가 이미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기반시설에도 적용 단 비용부담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도체 산업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함

산업기반시설은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현재 첨단전략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23년부터 특화단지별로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¹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에 비하여 정부의 지원 규모가 작아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제정안은 이러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및 비용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국가·지자체의 공공재 지원 의무 및 사업자 등 원인자(수요자)의 책임 범위, 반도체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 안보·경제 효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 범위 및 지원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참고자료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참조

또한, 각 제정안의 부칙은 설치 중인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기반시설,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되는 비용 등 구체적인 비용지원 대상에 대해서 적용례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반도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24. 8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⁶⁾.

산업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무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다량의 용수 확보 및 공급은 대규모 시설공사를 수반하므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나 의무지원이 아닌 완화된 재량지원 형태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지원 대상 용수공급 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물환경보

1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은 전력·용수·폐수·도로·처리수 지하관로 등 5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 가능 시설에 단년도 지원하고, 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특화단지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임. 단, 동 지원기준은 '23년 등 지원이 완료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기업 투자 규모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5%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전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전력, 용수, 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과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내용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용인시는 반도체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자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차. 기술개발·기반구축·예타 면제·세제지원·부담금 감면 등

(김태년의원안 제12조제1·3~11항 및 제15·21조, 박수영의원안 제16·17·19조, 송석준의원안 제8·13·15·17·19조 등)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	제16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②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	제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①·②(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④(생략) ⑤ 그 밖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사업 및 실증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 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반도체 특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	업 내용 그리고 시행방안 및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기업 등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반도체메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 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사업 2. 제16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가클러스터 내의 반도체사업 및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제7조제1항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대한 보조금 지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 특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업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		원 2. 제9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3. 제13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담금 3. 「초지법」 제23조 제8항에 따른 대체 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지정·운영 3. 국내에 있는 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경우, 성과급 지급, 조세감면, 또는 기타 필요한 재정적 지원 4.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핵심적 필요인력에 대한 국가 핵심인재지정 및 지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 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반도체 특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		원 5. 국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 소재·부품·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하는 바에 따른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⑫ (생략)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반도체 특구 지원 사업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 및 면제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김태년의원안 제12조는 반도체특구에 대한 기술개발·기반구축·예타조사 면제·세제지원·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각종 비용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¹⁷⁾(안 제1·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적용을 통한 보조금 지급(안 제4조), 조세 감면(안 제5·6조), 대체산업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안 제7조),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안 제8조), 토지 매입 임대(안 제9조), 입지구제최소구역 지정(안 제10조), 신용보증(안 제11조) 등임.

이와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기술개발사업 추진(안 제16조), 세제지원 특례(안 제17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대상 우선선정 특례(안 제19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송석준의원안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8조제3항),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및 실증사업 등의 추진(안 제13조), 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5조제1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대상 우선선정 특례(안 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17)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식산업센터 설립, 기업 및 연구기관 부지조성, 의료·교육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유턴기업 설비투자, 산업기술단지 조성,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 지자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등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자금 우선지원, 테스트베드 지정·운영, 우선 구매 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조세감면·기타 재정지원, 국가핵심인재지정 및 지원, 연구개발단지 조성, 부지할당,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9조).

□ 기술개발, 기반구축, 조세 감면, 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

먼저, 기술개발, 기반구축, 조세 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 감면¹⁸⁾,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지식산업센터 설립, 부지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18)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비용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반도체특구 등에서도 적용하도록 하거나, 현행법상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동 법에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지원수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수영의원안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술개발사업 개발성과물의 외부유출 대책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무규정으로 성과 외부유출 방지대책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경우 연구현장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조세 및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등에 따라 세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세 및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석을 통해 R&D 우수특허 창출 전략 수립, 유사중복 방지, 방향 수정 및 구체화 등이 가능하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사업

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우선 선정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김태년의원안 제12조제3항에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을 완전히 적용배제하는 반면, 박수영의원안 및 송석준의원안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도체산업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외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김태년의원안 제15조는 반도체 특구 지원사업과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우선 선정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회 보고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중복 규정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특화단지 지원 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등 신속하게 추진될 필

요성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되,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인 예타 우선 선정, 예타 면제는 예타 제도의 형해화 초래 및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교통유발부담금,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특례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는 부담금 부과 및 규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김태년의원안 제21조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2조제1항제4호¹⁹⁾ 등 반도체특구등의 입주

19)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복 규정 소지가 있으므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그리고, 송석준의원안 제19조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 자금 지원, 테스트베드 지정 운영, 연구개발 단지 등의 조성 및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현행법 체계 내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국가핵심인재 지정 등의 경우는 유사 정책 또는 입법례를 찾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사항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례를 추가할 실익이 낮아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정부(국가)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제12조(반도체 특구에 대한 지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카. 인·허가 특례 및 규제개선 신청(김태년의원안 제13·14조, 박수영의
원안 제15조, 송석준의원안 제16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3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제7조에 따라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관한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 업 협의 5. 그 밖에 반도체 특 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 당 인·허가등의 권한 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이하 “인·허가권자” 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인·허가권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 ·허가 등을 지체 없이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년의원안
제14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와 반도체 특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

김태년의원안

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또는 의제

김태년의원안은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의무 회신 기간을 두어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협의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박수영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본부(또는 반도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및 “인·허가 의제”는 기반시설설치 및 반도체특구등의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 복잡한 행정처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 규정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절차를 진행하되 그 기한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인·허가 의제”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 또는 반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관련법에 따른 승인·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및 의제 조항을 두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와 반도체 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개별 인·허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의견청취를 통한 원만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을 위한 협의 근거가 필요하며,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환경부 또한 인·허가 사항은 실체적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소관 부처와 협의 없이 승인하는 방식의 인·허가 의제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규제개선 신청 등

한편, 김태년의원안 제14조는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주체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동 조항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정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반영 필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타.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등(박수영의원안 제10조, 송석준의원안 제9조제1항 등)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0조(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9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① 정부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박수영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 또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전력 수급과 용수 공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박수영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반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다루므로, 많은 양의 전력 및 용수가 소요되는 반도체산업에 관한 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에서 특별히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위한 공급망의 설치·확충에 대해 국가반도체산업본부 또는 반도체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고 반도체산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의 수립 주체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에 전력망 및 용수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도체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박수영의원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협약 체결 조항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지자체 보상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지자체 지원 및 주민과의 협약 근거 규정은 재정이 소요되는 보상 및 사업 등을 통해 국가-지자체-주민-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한 보상 및 지원사업, 용수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 수도권 공장 증설 등 특례, 일정 수준 이상 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병역 특례, 조세 및 스톡옵션 특례 등 (박수영의원안 제18조, 송석준의원안 제18조제1항 및 제15조 등)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8조(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①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는 국가반도체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국가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종	제1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입지 및 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체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중소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총 누적금액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① (생략) ②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기업 등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반도체사업 및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을 위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 허용

박수영의원안 및 송석준의원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국가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내 공장 신설, 증설 및 이전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진흥 측면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미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특례 적용 범위에서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부산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공장시설 등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 미적용

박수영의원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해소를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를 비롯한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등 업무에 장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 중 하나로 미국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화이트칼라 이그젠티언(White collar exemption)’ 제도와 일본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석가, 프로그래머, 컨설턴트 등 고연봉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및 시간외수당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개발 업무 또는 관리자 등에 종사하는 자 중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현재 국내에 관련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정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사례²⁰⁾가 있음.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고소득 연구개발 업무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20) 의안번호 20228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0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일정 연봉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 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근무형태로 성과 중심의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 등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체계의 예외가 발생하여 갈등이 유발되거나 다른 산업분야에 확대 적용 요구가 커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완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병역특례 제공

박수영의원안 제18조제4항은 국가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체 배정인력을 결정하고, 국가반도체산업체에 대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여 병역특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24년 5월 병무청이 발표한 「2025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 요원

1,000 등 총 6,500명의 인원중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100명, 반도체·저탄소·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산업기능요원 300명을 배정하기로 하였음.²¹⁾

반도체 산업은 2031년까지 15만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수한 인재를 병역특례 제도를 통하여 육성하는 경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행 「병역법」 제3조²²⁾는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을 통해 특례 조항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감소하는 병역자원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병무청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제도는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제2항과 충돌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및 배정인원 결정 시 우대하고 있는 점²³⁾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1) 병무청,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배정」,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2024. 5.)

2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23) 병역법 시행령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및 제77조(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 연구개발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 특례

송석준의원안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내국인이 반도체사업 및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특례는 내용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시설·장비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유인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 세법 및 조약 등에서만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조세 및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등에 따라 세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세 및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스톡옵션 특례(송석준의원안 제18조제3항)와 관련하여 반도체산업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미 스톡옵션 행사 시 조세 감면 특례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반도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스톡옵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하.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또는 특별회계 조성 등 (김태년의원안 제16·17조, 박수영의원안 제20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제16조(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제20조(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반도체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반도체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사업	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차입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7.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7.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업 유치사업 8.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 설치된 시·군 등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운영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8. 국가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사업 9. 국가반도체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11.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3.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4.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김태년의원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을, 박수영의원안은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국가재정법」 제14조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도체산업 지원,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생산시설 등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그 밖에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 및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혁신발전 지원, 해외 기업 유치사업, 시·군 등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 등의 용도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안정적인 재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출연금(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는 이렇다 할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용도(세출)과 관련하여,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용자, 벤처

기업 및 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업 유치사업,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 설치된 시·군 등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등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이 일반회계 및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는 등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설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임.

□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김태년의원안은 제17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운영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운영 지원, 기업성장 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거. 인력양성 지원 등 (김태년의원안 제18~20조, 박수영의원안 제21~23조, 송석준의원안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18조(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 특구 내 설립 및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 특구로 이전(이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	제21조(국가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반도체산업 인	제12조(인력양성 등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업)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인력의 반도체 설계 등 기술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학교의 신설 및 증설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확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	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반도체 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국내 반도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육연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시스템 반도체 특화교육, 기업수요형 연구개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 반도체 관련 석·박사 인재양성에 관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 사항 9.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언어환경, 정주여건, 비자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0. 해외 우수 연구자와 연구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해외 인력교류·과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입지 및 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서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 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	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류기간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등의 기준과 절차 및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생략)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7.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전된 대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도권 이외의 특성화대학 등은 적합한 교육환경(시설 및 교원 등)이 확충되면, 해당 과정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고등교육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정부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 및 교육과정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안은 반도체특구 내 반도체 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및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이 경우 수도권정비법 적용 배제),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8조),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안 제19조),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대학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안 제20조)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박수영의원안은 정부가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면서,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안 제2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2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한 조사·분석 및 국제네트워크 강화 사업, 사증발급 특례 적용 (안 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송석준의원안은 정부가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면서,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1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안 제12조) 규정하고 있으며, 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서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특례 적용 등(안 제18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전문인력양성,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등의 지정, 교육공무원 등에 관한 휴직 등 특례, 전략산업종합교육 센터의 지정,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2024년 1월 제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계 인재육성과 관련한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령을 통해 개정안에서 규정하도 있는 대부분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제도의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법에서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김태년의원안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및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이 경우 수도권정비법 적용 배제)은 현행법상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재양성을 위한 필요성 및 대학 신설 및 이전으로 인한 효과를 중심으로 반영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별 인력지원 양성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박수영의원안 제22조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주체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수영의원안 제24조제4항 관련, 우수 과학기술인력 및 첨단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해외 우수인재 사증제도(사이언스카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반도체산업 및 연구”로 수정하고, 사증발급 제도 관련 법무부와 협의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너. 산업진흥 전문기관의 설치(박수영의원안 제25조, 송석준의원안 제14조)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제25조(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	제14조(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확보,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반도체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국가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3. 국가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반도체설계 등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지원 및 반도체 분야 세부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5.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국가반도체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반도체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3.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반도체설계 등 경쟁력 강화와 발전지원 및 반도체 분야 세부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5.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 6. 반도체산업 관련 우수인력 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사업 7.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사업 및 실증사업 8. 반도체산업 발전과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 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 연구

박수영의원안	송석준의원안
	개발, 경영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박수영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시장 및 기술 조사·분석, 연구개발 사업, 창업 및 경영 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신산업 발굴 지원, 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 또는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도체산업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반도체 업종에 특화되어 전문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창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의 분야에서 반도체 및 연관 산업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 반도체산업협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관련 사업 기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전문기관 신설 필요성이 낮고, 재정지원이 법률에 의해 강제될 경우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다.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면제, 유출 및 침해 금지 등

(박수영의원안 제27~35조)

박수영의원안
제27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반도체산업 기술 보유자가 해당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박수영의원안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취득 ·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국가 반도체산업 기술을 취득 ·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29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국가반도체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 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 ·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제3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수영의원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예비·음모) ①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28조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수영의원안 제27조부터 제35조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등의 면제,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신고, 신고자 포상 및 보호, 청문, 벌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3장(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8장(보칙) 등에서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수출 승인, 보호조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의 경우 반도체산업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박수영의원안의 경우 국가반도체산업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술 수출 의무를 규정하고 8가지의 위반 사유를 규정하며, 국내 대상 기술유출 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5억원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표 5]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박수영의원안 기술 보호 관련 규정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박수영의원안
기술 수출 승인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필요(법 제12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에 관해서는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안 제27조)
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	8개 사유 (미승인 전략기술 수출, 권한없는 자가 보유한 문서 등의 삭제 거부 및 사본 보유 행위, 전략기술의 목적외 사용 행위 등 포함)(법 제15조)	3개 사유(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취득·사용·공개, 이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침해 신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 및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조치 (법 제12조, 제13조)	대상기관의 장은 즉시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요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박수영의원안
		가능(안 제29조)
포상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조항 없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 금 지급.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 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법」을 따름 (안 제30조)
기술보호 관련 청문	기술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해 외 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 회복 등에 대하여 청문 실시 의무(법 제46조)	기술보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청 문절차 없음
벌칙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법 제15조제1~3호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인 경우 최대 20년/20억원 -법 제15조 각 호(46호 제외) 위반 시 최대15년/15억원 -법 제15조 46호 위반 시 최대 5년/5억원 등 -범죄수익재산 몰수 규정 없음 -징역형·벌금 병과 관련 일부 규정 있음 -예비·음모, 양벌 규정 없음	-외국 사용 목적으로 유출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국내 대상인 경우 최대 10년/10억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시 최대 5년/5억원 - 범죄수익재산 몰수 - 징역형 및 벌금 병과 가능 - 예비·음모 규정 있음 - 양벌 규정 있음
사법경찰	관련 조항 없음	-사법경찰관리 규정(안 제28조)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 수출 승인 절차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 사유도 3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대상 기술 유출 시 벌칙을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억원의 벌금 부과로 규정하는 등 기술 보호 수준을 일부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징역형과 벌금의 병과 가능 규정, 범죄 수익재산 몰수 관련 규정, 포상 및 신고자 보호, 사법경찰관리 규정 등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일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반도체 관련 주요 기술의 보호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반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데, 박수영의원안과 같이 반도체산업 및 기술에 한정하여 개별법으로 기술보호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달리 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반도체 산업 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출처 : OMDIA)

□ 글로벌 산업 규모

(단위: 억불)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전체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메모리반도체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NAND	540	610	460	572	685	594	387
시스템반도체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광개별소자	686	731	743	767	899	917	888

□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별 시장점유율

(단위: 억불)

구 분	지 역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Total	세 계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한 국	923	1,146	790	871	1,166	1,054	717
	(%)	21.4%	23.7%	18.4%	18.3%	19.6%	17.6%	13.2%
메모리반도체	세 계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한 국	801	1,016	657	730	995	872	577
	(%)	60.7%	61.7%	58.4%	56.9%	59.1%	60.4%	61.0%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한 국	531	716	445	472	671	559	376
	(%)	72.3%	72.4%	71.6%	71.1%	71.3%	70.6%	73.5%
NAND	세 계	540	610	460	572	685	594	387
	한 국	269	299	211	257	324	313	201
	(%)	49.9%	49.0%	45.9%	45.0%	47.2%	52.6%	52.0%
시스템반도체	세 계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한 국	69	76	78	78	100	115	84
	(%)	3.0%	3.1%	3.2%	2.9%	3.0%	3.2%	2.3%
광개별소자	세 계	686	731	743	767	899	917	888
	한 국	53	55	55	63	71	67	56
	(%)	7.7%	7.5%	7.4%	8.2%	7.9%	7.3%	6.3%

① (미국) 「반도체 과학법」 제정('22.8월)을 통해 제조,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527억불(약 73조원) 규모 보조금·대출·보증 재원 마련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BAE시스템스(英) 3,500만불('23.12), 마이크로칩(美) 1.6억불('24.1), 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불('24.2), 인텔(美) 200억불('24.3)

○ 「국세법(IRC)」을 개정('22.8월)하여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② (일본)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11)를 통해 1.7조엔*(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 조성

* ('21) 6,170억엔, ('22) 4,500억엔, ('23) 6,322억엔

* 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TSMC 공장에 4,760억엔 지급(약 4.4조원, '22), 마이크론(美)에 2,135억엔(약 1.9조원, '23.10) 지급 결정 등

○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최대 20% 감면 발표('23.12)

*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케미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③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적용(법인세의 30% 한도, '24.7 ~ '29.12)

④ (중국) 역대 최대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24.5)

* 과거 사례 : 1차 펀드('14, 1,390억 위안), 2차 펀드('19, 2,040억 위안) 조성

○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제공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 근거법>

구분	지원 근거법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 보조금(390억달러) 등 재정지원 527억달러, 세액공제 25% * 보조금 : 세부 지원기준 및 절차 (NOFO), 가이드라인 규정 * 세액공제 : 「반도체과학법」에서 국세법 section 48D 추가 규정 ■ 첨단반도체 R&D 지원 (110억달러)
EU	EU 반도체법 (EU Chips Act)	■ '30년까지 민관 반도체 투자 430억유로 이상 자금 조성 ■ 「반도체법」 요건 충족*시 「경쟁법」상 국가보조금 금지 예외 → 회원국이 보조금을 책정하면 EU 집행위가 심사·승인 * EU 내 최초인 제조시설, EU 반도체 공급망 긍정 기여 등 ■ 기존 EU 예산을 전용하여 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활용
일본	5G 촉진법 (정보통신기술법)	■ 반도체 중소기업 채무보증, 반도체 관련 주식회사 신주 인수 ■ 반도체 관련 기구·비품·건물 부속 설비 및 구축물에 대한 과세특례
	NEDO법 (신에너지·기술 종합개발기구법)	■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보조금 * 경제안보기금 + 첨단반도체기금 + 포스트5G기금 = 1.7조엔
	경제안보촉진법	■ 반도체 공급망 강화 지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중국	집적회로산업 및 SW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배포 관련 국무원 통지	■ 기술 수준 및 영업 기간에 따라 법인세 차등 면제 * 28nm↓ + 영업 15년↑ : 10년 면제 / 65nm↓ + 영업 15년↑ : 5년 면제 / 130nm↓ + 영업 10년↑ : 2년 면제 ■ 동 통지와 별도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 (1기, '14년) 1,387억 위안, (2기, '19년) 2,041억 위안, (3기, '24년) 3,440억 위안
대만	산업혁신조례 제10조제2항	■ R&D 투자세액공제 (25%)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 (25%)
	미래지향적인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 장비 지출에 적용가능한 투자공제방법	■ R&D 투자세액공제 (25%) 조건 * 당해연도 R&D 투자액 60억 대만달러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5% 이상 ■ 첨단 공정용 장비 투자세액공제 (25%) 조건 * R&D 세액공제 조건 + 당해연도 100억 대만달러 이상 장비 구입

참고 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투자 동향

-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 : '28년 1호 팹 착공 예정 ('30년 완공)
- 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단) : 1호 팹 부지 조성 **40%** 완료된 상태, 투자 계획에 맞춰 '25.3월 1호 팹 착공 예정 ('27.5월 완공)

□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 전력 : 용인 국가·일반산단 내 팹 준공 시기에 맞춰 '**53년까지 10GW** 이상 필요 → 신안성변전소를 통한 **2.8GW** 既 확보
 - 용인 국가산단 : '30년부터 산단 내 **LNG** 발전소로 **3GW** 공급,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6GW** 이상 공급
 - 용인 일반산단 : 한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8GW** 既 확보 ('21.12월),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3GW** 이상 공급
- 용수 : 용인 국가·일반산단에 '**53년까지 136만톤** 이상 필요
 - 용인 국가산단 : '31년부터 하수 재이용수, 팔당댐을 통해 **20만톤** 공급 + '35년부터 화천댐 발전용수를 통해 **60만톤** 추가 공급
 - 용인 일반산단 : 여주보에서 **26.5만톤** 既 확보 (~'27년), 팔당댐에서 **30.8만톤** 확보 중 (~'35년)

□ 국비 지원 현황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속도를 감안하여 '23년 용인·평택 **1천억원**, '24년 포항·구미 등 **439억원** 예산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현황 >

구 분	예산 지원액	지원 항목
용인·평택	1,0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변전소·송전선로 (5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용수관로 (500억원)
구 미	200억원	■ 구미대교 신축 (200억원)
포 항	154억원	■ 영일만산단 정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154억원)
울 산	38억원	■ 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38억원)
새만금	47억원	■ 용수·폐수 관로 (47억원)
합 계	1,439억원	

□ 공공기관 지원 현황

-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10조원 이상 규모)를 통해 한전·수공·LH 등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구축

□ 국비 지원기준

-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도로 4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적용하되, 특화단지별 500억원 한도*로 지원

* 단, 기업 투자액이 他 특화단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용인·평택 특화단지는 용인 일반산단, 용인 국가산단, 평택 일반산단으로 구분하여 각 500억원씩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특화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0 → 25%	15 →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10 → 20%	5 → 15%

참고 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주요 내용('24. 6.)

◇ '24. 5월 발표된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 구체화 →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금융·재정·세제·기반시설 지원

① 금융지원

－ 투자자금 : '27년까지 산은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출자 →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24.7월부터 가동

* 적용 금리 : (대기업) 최대 1.0%p 우대, (중소·중견기업) 최대 1.5%p 우대

－ 소부장·팹리스 : 現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원 ('23~'25년 출자) + 신규펀드 8천억원* ('25~'27년 출자) 추가

* 구성 : (재정) 2천억원 + (정책금융) 2천억원 + (민간매칭) 4천억원 = 8천억원

② 세제지원

－ 적용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대상 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추가 검토 ('24.12월 결정 예정)

－ 적용범위 : SW 구입비 등도 대상에 포함*,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적용

* 공제대상 비용 추가 : SW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자문비

** 현재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만 적용

－ 감가상각 : R&D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 단축 (5년 → 3년)

③ 재정지원 : '22년~'24년 3조원 → '25년~'27년 5조원

－ R&D 예타 신속화 :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5,569억원),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9,405억원, 과기부), 미니팹 구축 (9,060억원)

- 글로벌 R&D 확대 : 글로벌 첨단 공공 웹과 국내 공공 웹 연계 (425억원, 과기부), 한 - 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 사업화 지원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과기부), 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인력양성 : 반도체 특성화대학 (現 18개소) · 대학원 (現 6개소) 및 AI반도체 대학원 (現 3개소) 확대

④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 도로 : 국도 45호선 이설 · 확장 예타 면제, 국비 지원
- 용수 : 국가 · 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예타 면제, 수공 비용 분담
- 전력 : LNG 발전 (3GW)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송전선로 비용은 공공 · 민간이 분담하되, 8월말 세부 계획 수립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